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561
------------	------

2021년 8월 31일  
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송도호 의원 외 10명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8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1년 8월 3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송도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저상버스가 다수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

이에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고령자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.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## 나. 주요골자

-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기준을 신설함(안 제10조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8. 20. ~ 2021. 8. 27.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<sup>1)</sup>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) : 원안가결

-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주거지역 곳곳을 운행하고, 교통약자의 이용수요가 많은 교통수단이므로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 마을버스 등의 교통수단 도입 필요
- 아울러,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 마을버스 도입사업 등은 우리시 중점 시책사업으로, 수년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례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---

1) 버스정책과-26622호(2021.8.25.)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여 신규로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시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교통약자들의 마을버스 이용시 저상버스 등이 도입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마을버스를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서울시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14조<sup>2)</sup>에 따라 국비:시비(4:6)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'25년까지 운행가능노

2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14조(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)

-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. 1. 저상버스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. 특별시와 광역시: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
-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1. 특별시: 국가 40퍼센트,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

선의 모든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<sup>3)</sup>할 계획을 세운바 있음

- 하지만,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좁은 도로 및 고지대 등을 주로 운행함에 따라 차량길이<sup>4)</sup>가 긴 대형 저상버스는 도입 및 운행이 어려운 실정임

이에 국토교통부는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 R&D를 시행<sup>5)</sup>하여 「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<sup>6)</sup>」을 마련하였고, 「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(2017~2021)」을 변경<sup>7)</sup>하여 중형저상버스 보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, 자동차제조사에서도 이에 맞는 차량의 제작과 판매를 시행하고 있음

- 서울시는 '20년도에 일부 마을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8대<sup>8)</sup>를 도입·지원<sup>9)</sup>하였으며, '21년도에 추가적으로 마을버스 전기차량(80대) 도입<sup>10)</sup>과 연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<sup>11)</sup>임

- 현행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<sup>12)</sup>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

3)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

② 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4) 국토교통부 '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' 2016. 12.

현재 버스 종류는 대형버스(길이 11m), 중형버스(길이 9m)이며, 마을버스로 운행 중인 차량 (길이 7m)이며 R&D로 개발 중인 중형저상버스는 7.5m임(46p)

5)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최종보고서(2018.1. 30.) : 국토교통부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6)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753호(2018.12. 3.) :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

- 차량길이 7m 이상, 9m 미만 저상버스 모델 신설

7)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935호(2019.12.31.) : 「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」(2017~2021)

8) 서대문구 대형저상 6대, 동작구 중형저상 2대 도입(※마을버스 전체 차량 1,588대)

9) 매칭비율 : 국가 40퍼센트,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

10) 제299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, p.24

11)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시 고상→저상 노선 우선 선정·지원

12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

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상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

- 또한, 마을버스는 일반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고지대, 주거 밀집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저상 마을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u></p>